

군산시 공고 제2021-1723호

군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9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제정토록 규정

2. 주요내용

○ 금주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나. 자원봉사 활동 및 지원

다.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라. 음주폐해로부터 보호 및 지원

마. 과태료 부과 등

3. 의견제출

군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건강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4091 군산시 수송동로 58 군산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전화 : 063-460-3223, FAX : 063-468-4763)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시민건강계(063-460-32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군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 군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이 유	비고
	찬성	반대		

군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주”란 술을 마시거나 열린 술병을 소지한 상태를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이란 군산시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을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생활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건전한 음주문화를 실천하는 환경조성과 음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금주구역 지정 등) ① 시장은 음주로 인한 폐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학교 건물과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4.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 시설
5. 시내버스 정류장, 택시 승강장 등 공공장소
6. 그 밖에 시장이 음주의 폐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주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경계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의 별표 1의 2를 따른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 및 군산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건전한 음주문화 교육 및 홍보)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에 대한 절주와 금주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6조에 따른 활동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활동한 자원봉사자에게는 활동비 등 필요한 실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시장은 시에서 발행되는 신문·잡지 및 방송 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문화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참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에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참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음주폐해로부터 보호 및 지원) 시장은 음주폐해를 경험하고 있는 시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 알코올 사용 의존자에 대한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 및 연계사업
- 2. 음주로 인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상담 및 보호시설 연계사업

제10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자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자원봉사 활동비 지원
- 금주구역 지정 안내판 설치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군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4. 작성자

작성자	군산시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연락처	(063) 460-3223

군산시 공고 제2021-1741호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9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와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우리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조례 위임사항 등 반영

- 1) 주민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반영을 위한 재열람 공고
 - 도시계획조례안 제7조, 제8조
- 2) 지구단위계획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3년 한정
 - 도시계획조례안 제15조의 2
- 3) 인·허가 등 의제시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설치·운영
 - 도시계획조례안 제24조의 2

4) [별표25] 개발행위허가기준 차폐수목에 대한 기준 설정·운영

나. 타법 개정에 따른 도시계획조례 개정사항 및 오기내용 정정

3. 의견제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4일 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도시계획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도시계획과(Tel. 063-454-3502, FAX. 063-452-8171,
전자우편 : kimskking@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계(전화 063-454-35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이 유	비고
	찬성	반대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8조제5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시 지역을 주된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및 시 홈페이지와 시청의 게시판 또는 공보에 공공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8조제4항 각 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이 변경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및 제25조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다시 공고·열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의 재공고·열람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제3절에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으로 한정한다.

제24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준용한다.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56조의2제1항제4호”를 “영70조의12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6조의2제2항제5호”를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56조의3제5항제5호”를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로 한다.

제26조제2항제8호 중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를 “경우”로, “한정한다(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를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다목·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종자연경관지구안”을 “자연경관지구안”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역사문화미관지구”를 “특화경관지구”로 한다.

제50조제2항제1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을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으로 한다.

제55조제2항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를 “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제58조 중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을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으로 한다.

제59조제2항제1호 중 “시”를 “시 또는 연접한 시·군”으로 한다.

제59조의2의 제목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를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건폐율 완화”로 한다.

제5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75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60조제1항제19호 중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에는”을 “성장관리계획구역내에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제60조제4항제1호 중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를 “지역”으로, “따라”를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로, “의 추가건설을”을 “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허용할 수 있다.

4.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 법 제10조제4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외에 별도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허용할 수 있다.

제63조제1항 전단 중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주택재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63조의3제2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별표3, 별표 4, 별표 6,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10, 별표 15, 별표 16, 별표 19, 별표 22, 별표 2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개정2014.03.03., 2016.10.31., 2019.04.15.>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이하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1호의3에 따른 단지형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같은호 라목 중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중 같은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같은호 라목 및 바목과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타미 설치된 골프 연습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등의 온실
-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조 제2호 가목 태양에너지에 한한다.)
-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4]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개정 2012.08.16, 2014.03.03., 2015.03.02., 2016.10.31., 2017.12.15.>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호 나목 및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같은호 가목, 나목, 라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같은호 가목·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중 지식산업센터·인쇄·기록매체복제업·봉제(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두부제조업·세탁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1의3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 시행령 “별표 13”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조 제2호 가목 태양에너지에 한한다.)

[별표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개정 2016.10.31., 2019.04.15.>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다목의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택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다음 각목의 기준에 한한 것은 제외한다. 단, 숙박시설로 둘러싸인 지역은 거리제한 적용을 받지 아니하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가.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70미터 이상의 대지
 - 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의 대지일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 다. 가목 및 나목의 거리 산정시 도로, 하천 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14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정비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도축장·도계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7]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개정 2017.12.15.>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다음의 거리 기준에 따른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1)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의 대지

(2)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의 대지일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나.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다음의 거리 기준에 따른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1)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의 대지

(2)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의 대지일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다. 가목 및 나목 거리 적용시 숙박시설로 둘러싸인 지역은 거리제한 적용을 받지 아니하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거리 산정 시 도로, 하천 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너비를 산입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단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 하천 등으로 건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 시 산입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공장 중 출판업·인쇄업·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4 제14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정비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개정 2017.12.15.>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다음의 거리 기준에 따른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1)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의 대지

(2)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의 대지일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나.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다음의 거리 기준에 따른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1)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의 대지

(2)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의 대지일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다. 가목 및 나목 거리 적용시 숙박시설로 둘러싸인 지역은 거리제한 적용을 받지 아니하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거리 산정시 도로, 하천 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너비를 산입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단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 하천 등으로 건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4 제14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정비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개정 2017.12.15.>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다음의 거리 기준에 따른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 (1)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의 대지
- (2)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의 대지일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나.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다음의 거리 기준에 따른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 (1)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의 대지
- (2)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의 대지일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다. 가목 및 나목 거리 적용시 숙박시설로 둘러싸인 지역은 거리제한 적용을 받지 아니하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거리 산정 시 도로, 하천 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너비를 산입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단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 하천 등으로 건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 시 산입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4 제14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다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별표 10]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개정 2017.12.15.>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다음의 거리 기준에 따른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 (1)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의 대지
- (2)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의 대지일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나.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다음의 거리 기준에 따른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 (1)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의 대지
- (2)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의 대지일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다. 가목 및 나목 거리 적용시 숙박시설로 둘러싸인 지역은 거리제한 적용을 받지 아니하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거리 산정시 도로, 하천 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너비를 산입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단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 하천 등으로 건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 시 산입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중 정비공장, 폐차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별표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개정 2013.04.01., 2015.03.02., 2016.10.31., 2019.04.15.>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문화집회시설중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임·축·수산업용 판매시설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 한한다), 교육원(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에 한한다), 연구소(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에 한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중 도정공장·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및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시행령 별표 1의3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시행령 “별표 13”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가목의 창고 (농·임·축수산업용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같은호 가목을 제외한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6]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개정 2013.04.01., 2015.03.02., 2016.10.31., 2019.04.15.>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및 생산자 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 농어업 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한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 가.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5” 12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 및 라목의 집배송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단, 이 조례 개정 시행전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을 받아 영업중인 폐차장에 한하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2012.11.23]제 536호에 따른 해체작업장 및 부품보관창고는 허용한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2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2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9]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개정 2016.10.31., 2017.12.15.>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별표24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별표24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단란주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별표24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과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공장(「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또는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공장으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 가. 별표 15 제1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만, 인쇄·출판시설이나 사진처리시설로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모두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화학제품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물, 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는 공정이 없는 고체성 화학제품 제조시설
- (2) 「화장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기농화장품 제조시설
- (3) 「농약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
- (4)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
- (5) 동·식물 등 생물을 기원으로 하는 산물(이하 “천연물”이라 한다)에서 추출된 재료를 사용하는 다음의 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반응시설,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 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및 농축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제조시설로 한정한다)

- 1) 비누 및 세제 제조시설

- 2) 공중위생용 해충 구제제 제조시설(밀폐된 단순 혼합공정만 있는 제조시설로서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다.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라.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마.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다만,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염색시설은 제외한다.

- (1) 천연물에서 추출되는 염료만을 사용할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표백시설, 정련시설이 없는 경우로서 금속성 매염제를 사용하지 않을 것
-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일 것
- (4)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할 것

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의 사업장 중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으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때 군산시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공장건축 가능 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참고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폐차장(단, 이 조례 개정 시행전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을 받아 영업중인 폐차장에 한하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2012.11.23 제536호]에 따른 해체작업장 및 부품보관창고는 허용한다.)

[별표 22]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개정 2015.03.02., 2016.10.31., 2017.12.15., 2019.04.15.>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 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 시행령 별표 1의3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 시행령 “별표 13”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임·축·수산업용에 한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위험물취급소, 액화가스 취급소에 해당하는 것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신설 2017.12.15.>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시설

[별표 25] <개정 2020. 1. 2.>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주요도로”란 「도로법」에 의한 도로이며 왕복2차로 이상의 포장된 도로를 말한다.

나. “주거 밀집지역”이란 10호 이상의 인가(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가구)가 밀집된 지역, 자연취락지구를 말하며, 이에 대한 산정기준은 주택과 주택(부속 건축물을 제외한 외벽기준) 사이의 직선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가구수의 합으로 한다.

다. “하천”이란 「하천법」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라. “저수지”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5호 마목의 저수지를 말한다.

마. “공공시설”이란 「학교보건법」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학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공항, 공공청사를 말한다.

바. “문화재”란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전통사찰, 향토문화유산을 말한다.

사. “경계”란 사업부지 경계를 말한다.

2. 태양광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단, 시장은 사업장 부지 반경 200미터에 위치한 마을의 주민설명회를 권고 할 수 있다.

가. 주요도로에서 150미터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나. 주거 밀집지역의 경계로부터 15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단, 사업부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신청자가 다른 경우도 면적 포함)이 될 경우에는 300미터 적용

다. 공공시설, 문화재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된 농어촌공사 관리 우량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마. 주변 경관과 농지 보호를 위하여 도로 및 인접토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완충공간을 확보하여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고 차폐수목(2열식재, 1m 간격, H=2.0m 이상)을 식재하여야 함.

바. 발전시설 부지내 배수계획시 토사유실 방지를 위하여 구조물로 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침사지를 두어 재해예방을 하여야 한다.

사. 1만제곱미터 이상(신청자가 다른 경우도 면적 포함)의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부지 밖으로 배수처리시 구조물로 만들어진 배수로가 없거나 하천이 없을 경우 주변의 유역면적을 산정하여 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아. 군산시민(군산시에 계속하여 5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으로 발전용량 300kW 미만의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이격거리 기준을 30% 완화하며, 본인 소유토지(5년 이상 소유)에 신청할 경우 50%완화 적용.(단, 해당가구 80%이상 동의시 가능)

3. 폐차장 및 고물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주요도로에서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나. 하천이나 저수지 경계로부터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 주거 밀집지역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택 대지경계선에서 시설부지 경계선까지 직선거리로 200미터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라. 공공시설, 문화재 부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마. 농지에 설치하는 경우 주변 경관과 농지 보호를 위하여 도로 및 인접토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완충공간을 확보하여 수목 식재할 것

바. 비가림 시설 설치를 통하여 강우시 빗물이 사업장에서 발생한 오염물질과 직접 접촉하지 않게 하여야 하며, 강수가 농수로로 유입되는 지역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사. 폐차장, 자원순환관련시설의 경계 울타리를 설치할 경우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제2호의 지역에 입지한 농지이용시설 상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단, 자가발전을 위한 시설은 제외한다.

가. 건축물 사용승인 후 3년이 지난 후 전기사업허가 및 공작물축조신고를 하여야 한다.

나. 가목의 전기사업허가 및 공작물축조신고 시 건축물 사용승인 후 3년간의 영농 기록(농산물 생산·판매 관련서류)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u>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 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지역 케이블 텔레비전 또는 인터넷 방송 또는 해당 읍, 면, 동사무소의 게시판과 시홈페이지 등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u></p> <p>② (생략)</p>	<p>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u>법 제28조제5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및 시 홈페이지와 시청의 게시판 또는 공보에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8조(재공고 열람사항) ①<u>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 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u></p> <p>②<u>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공고 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u></p>	<p>제8조(재공고 열람사항) ①<u>법 제28조제4항 각 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이 변경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및 제25조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다시 공고·열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u></p> <p>②<u>제1항의 재공고·열람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u></p>
<p><신 설></p>	<p>제15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u>영 제50조의2제1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으로 한정한다.</u></p>

<신 설>

제25조의2(성장관리방안의 내용 등) ① 영5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1. 2. (생략)

② 영 제5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할 수 있다.

1. 2. (생략)

③ 영 제56조의3제5항제5호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성장관리방안을 고시할 때 경미한 사항으로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말한다.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생략)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 다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7. (생략)

제24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준용한다.

제25조의2(성장관리방안의 내용 등) ① 영70조의12제3호-----

-----.

1. 2. (현행과 같음)

②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

-----.

1. 2. (현행과 같음)

③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

-----.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7. (현행과 같음)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
 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
 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
 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
 설 (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로서 6
 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
 으로 한정한다(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신 설>

9. (생 략)

<신 설>

제32조(자연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종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 15. (생 략)

제41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①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미관
 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
 축할 수 없다.

1. ~ 3. (생 략)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8.-----

 경우-----

 ----- 한정하며,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다목
 ·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
 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현행 제9호와 같음)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목적으로 설치하
 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2조(자연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 자연경관
 지구안-----
 -----.

1. ~ 15. (현행과 같음)

제41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①----- 경관지구

 --.

1. ~ 3. (현행과 같음)

4. -----
 -----특화경관지구-----

5. ~ 13. (생 략)

②·③ (생 략)

제50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생 략)

② 영 제7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 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나.·다. (생 략)

-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나. (생 략)

제55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생 략)

5. ~ 1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50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가. ----- 「물환경보전법」 -----

나.·다. (현행과 같음)

-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

가.·나. (현행과 같음)

제55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3. (생략)

③ ~ ⑤ (생략)

제58조(방화지구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9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생략)

② 영 제84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3. (생략)

제59조의2(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법 제7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성장관리방안에 영 제56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른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 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

3.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8조(방화지구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 준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

제59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 (시 또는 연접한 시·군) -----

2.·3. (현행과 같음)

제59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건폐율 완화) 법 제75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p>1.·2. (생 략)</p> <p>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p> <p>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폐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시행령 “별표 13”의 규정에 따른 1종사업장 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조문신설 2009.11.16.></p>	<p>1.·2. (현행과 같음)</p> <p>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 ----- -----</p> <p>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 ----- ----- -----</p>
---	--

군산시 공고 제2021-1742호

「군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9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가.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적용대상이 없는 조문 및 명칭 변경 등 현행과 불일치 하는 조문 정비
- 나. 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 부과하는 규정 삭제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
 -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2003.05.29.)되어 현행화
 - 주택건설촉진법 제11조제3항을 주택법 제84조로 변경 (안 제1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1호를 주택법 제2조제5호로 변경 (안 제2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3을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으로 변경 (안 제6조)
 - 금융단 협정을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으로 변경 (안 제7조)
 - 공동주택관리령 및 관리규칙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변경 (안 제9조)

나. 적용 대상이 없는 조문 삭제 (제5조~제9조, 제16조~제19조)

- 농어촌주택사업, 주택개량재개발사업

다. 특별회계 금고 지정(안 제4조)

- 「군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고로 규정

라. 법령의 위임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 규정 삭제

- 시장을 수취인으로 하는 입주자의 화재보험 의무규정 (제15조)

- 상환금 체납 시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해 체납 처분 규정(제20조)

마.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정비

3. 의견제출

「군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주택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 573-703 군산시 시청로 17번

군산시청 주택행정과(전화 063-454-3702, FAX :063-452-8828)

- 전자우편 : rosemoss@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주택행정과 주택행정계 담당자(전화 063-454-370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군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붙임참조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군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산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법」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기준과 범위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국민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설치) 제2조에 의한 국민주택사업과 동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주택금고 설치) 시장은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를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은행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세입·세출) ①국민주택건설 사업의 세입은 정부의 대부금, 보조금, 시의 자체 부담금,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입주자로부터 상환받은 할부금, 입주금, 주택관리의 수입금, 공채소화 수입금 및 기타 이 회계에 소속하는 재산의 사용수입 매각대금 등으로 한다.

②국민주택건설 사업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국민주택건설(대지조성 및 단지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 포함)
2. 정부의 대부금, 주택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기타 타 회계로부터의 차입금 상환
3. 국민주택과 부대 및 복리시설의 관리

4. 국민주택 건설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5. 주택에 관한 조사 연구
6.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제6조(용자조건) ①국민주택자금의 용자금 이율 및 상환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국민주택 자금을 용자한 때에는 개인별로 주택용자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할부금 등 상환) ①입주자는 용자조건에 따라 할부금 및 이자를 월별, 분기별로 상환하여야 한다.

②입주자가 용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익일부터 납기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서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제8조(용자금의 일시상환) ①입주자는 용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비 자체자금에 의한 용자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관리비) 공용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준용 규정)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조례에 의거 시행한 사업은 이 조례에 의거 시행한 사업으로 본다.

군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군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는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적용대상이 없는 조문 및 명칭 현행화 등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 사항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군산시 안전건설국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연락처	(063) 454 - 3690

군산시 공고 제2021-1744호

「군산시 국민임대주택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9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국민임대주택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전기요금 지원대상 구체화 및 전기요금 산정의 근거 마련을 위한 조문 정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

-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현행화 (조례명, 제1조, 제2조)

나. 전기요금 지원대상 구체화를 위한 조항 신설 (제2조)

다. 전기요금 산정방법 반영을 위한 조문 보완 (제3조)

라. 기타 조문 내용의 명확화를 위한 정비

3. 의견제출

「군산시 국민임대주택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건설과

(전화 : 063-454-3623, FAX : 063-452-8172, 전자우편 : ding1219@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건설과 도시조명계(063-454-36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 군산시 국민임대주택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이 유	비고
	찬성	반대		

군산시 조례 호

군산시 국민임대주택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국민임대주택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산시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관내 공공임대주택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단지 내 도로 가로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를 경감하여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군산시 관내 공공임대주택단지로 그 대상은 아래와 같다.

1.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영구임대주택인 공공임대주택단지
2.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국민임대주택이며, 그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공공임대주택단지

제3조(지원범위) 제2조의 공공임대주택단지에 대하여 매월 부과되는 보안등 전기요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단, 지원대상은 전력공급자와 보안등 전용계약을 체결하고 별도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납부) 군산시장은 제3조의 지원비용에 대하여 전력공급자로 하여금 매월 청구하도록 하고 청구서에 의거 납부한다.

제5조(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제4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의 다음 달 전기요금부터 적용한다.

군산시 국민임대주택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세출증가 : 있음
- 세입감소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군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4. 작성자

작성자	군산시 안전건설국 건설과장 김 판 기
연락처	(063) 454 - 3623

군산시 공고 제2021-1746호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9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 기준 인구(20만명 이상) 도시 권장 상근인원(10명) 확보기준에 따른 자원봉사센터 정원 단계별 조정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에 따른 정규직 전환추진

2. 주요내용

- 가. 센터 정원 조항 센터장 1인과 “5인이내”의 직원 → 센터장 1인과 “7인 이내”의 직원으로 수정(안 제16조의①)
- 나. 별표1의 기구와 정원, 별표2의 코디네이터 자격기준 추가

3. 의견제출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여성가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여성가족과(전화 : 063-454-3112, FAX : 452-9477,
전자우편 : kmin1125@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여성가족과 자원봉사계(전화 063-454-311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5인이내”를 “7인 이내”로 한다.

[별표 1],[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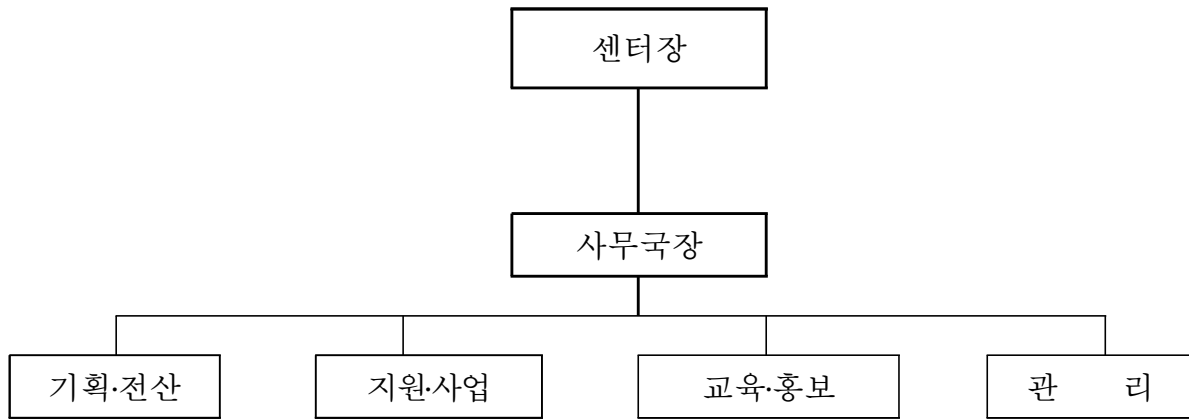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센터의 기구와 정원 (제16조 관련)

1. 기 구



2. 정 원

구 분	계	센터장	사무국장	운영요원	코디네이터	비 고
인 원	8	1	1	4	2	

[별표 2]

센터직원 자격기준 (제17조 관련)

구 분	자 격 요 건	비 고
사무국장	1. 자원봉사 기관·단체에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2년제 대학이상 졸업자중 자원봉사 또는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원봉사 또는 사회복지 관련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3. 7급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 업무에 3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4. 지역사회단체 임원으로 활동한 경력 5년 이상인자	
운영요원	1. 2년제 대학이상 졸업자중 자원봉사 또는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원봉사 또는 사회복지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자 2. 2년제 대학이상 졸업자중 자원봉사관련 기관·단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자원봉사 또는 사회복지 관련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코디네이터	○ 교육 1. 시민사회 ,사회복지 관련 분야 및 교육학 전공자 2. 국가 및 지자체에 등록(법인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법상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 및 자원봉사센터 등에서 1년이상 자원봉사 관련 근무경력이 있는자 ※ 법인이 아닌 단체는 회원이 100명 이상 3. 사회복지사(2급이상)자격증 보유자 ○ 전산 1. 전산 관련 분야 또는 시민사회, 사회복지관련 분야 및 교육학 전공자 2. 전산 관련 국가공인 자격증(DB관련 과목 포함)보유자 ※ 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2,3급 허용)등 (단, 워드프로세서 제외) 3. 전산관련 업무 6개월 이상 경력자	

※ 주) 자원봉사 관련학과는 사회복지학, 사회사업학, 지역개발학, 사회학, 행정학으로 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센터의 기구와 정원) ①센터에는 센터장 1인과 <u>5인이내</u>의 직원을 둔다.</p> <p>② (생략)</p>	<p>제16조(센터의 기구와 정원) ①----- ----- <u>7인 이내</u>-----.</p> <p>② (현행과 같음)</p>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6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군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개정조례로 인하여 예상되는 비용은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함

4. 작성자

작성자	군산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연락처	063-454-311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군산시 공고 제2021-1752호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 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9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지방보조금법)」이 제정 시행(2021. 7. 13.)됨에 따라, 지방보조금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방보조금의 목적,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 예산 계상과 관련한 예외 사항 규정 (안 제1조 ~제3조)
- 나. 지방보조금의 지원계획 수립, 공고, 접수, 서류심사, 교부 결정 통지, 법령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사유 (안 제4조 ~제 7조)

다. 재산처분의 제한,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 (안 제8조 ~제11조)

라.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기능, 구성, 직무,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실비보상, 운영세칙 (안 제 12조 ~제2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우) 54078

○ 전 화 : 063-454-2314, FAX : 063-452-8157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예산계(☎063-454-23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시책 추진을 위해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 할 수 있다.

제2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제4조(지방보조금 지원 공모 절차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제2항에 의거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군산시 공보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 1. 지원대상
- 2. 지원규모

3. 지원절차

4.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 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5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첨부서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6호에서 “지방보조금 교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말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 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처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 정하는 사항

제6조(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교부결정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않는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여 미리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사유) 법 제12조제1항에서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계, 중단 또는 폐지했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보조사업자가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재산 처분의 제한) 법 제21조의 중요재산의 처분 제한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며, 교부 결정시 그 기간을 정하여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

②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시장은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 10년
3. 항공기 :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 5년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시장이 발급한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 발급한 별지 제3호서식의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신고 포상금 지급 절차) ① 시장은 법 제25조와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장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제12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6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2. 그 밖에 지방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군산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자치행정국장
2. 문화관광국장
3. 복지환경국장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및 예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다. 그 밖에 시장이 지방보조금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제1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20조(회의록의 비치) 시장은 회의를 개최 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1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지방보조금 지원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산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군산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군산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조례 제9조제1항 관련)

중요재산 현황 보고서

자치단체명					
세부사업명					
재 산 명					
유 형					
목적(용도)					
주소	시·도 구분				
	상세주소				
면적(㎡)					
내역	수량				
	단위				
취득가액(원)		계	국고보조금	지자체부담금	자기부담금
				시도비 : 시군구비 :	
현재가액(원)					
보조금유형					
취득일자					
처분제한기간(일자)					
소유자구분					

【별지 제2호서식】 (조례 제10조제1항 관련)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 부동산

주 소			
물 건 ¹⁾	명칭	면적(㎡)	
사후관리기간	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연월일	

이 부동산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

직인

유의사항

1. 물건의 명칭은 토지(부지명), 건물(건물명)을 기재 / (예) 토지(○○리 마을회관부지), 건물(○○리 마을회관)
2. 해당 등기소에서는 이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이 부동산(건물, 토지)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서식】 (조례 제10조제2항 관련)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

주소			
물건	명칭	면적(㎡)	
말소 사유			
사후관리기간	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연월일	

이 부동산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



【별지 제4호서식】 (조례 제11조제1항 관련)

포상금 지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① 신청인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②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③ 포상금 지급신청 내용	신고접수 번 호	제 - 호	통보서 수령일
	신청금액	포상금 원	
④ 포상금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신청인 (예금주)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 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군산시 고시 제2021-127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 8. 20.

군 산 시 장



주 소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옥산로 272-6		
성명(법인명)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장		
하천명칭	탐천	하천등급	지방하천
점용장소 점용목적	○ 전북 군산시 임피면 영창리 1154번지 외1필지 ○ 양수장 설치		
점용면적	일시점용 1,152.8㎡/영구점용 78.0㎡		
최초허가일	2021년 8월 23일		
점용기간	일시점용 : 2021년 9월 1일 ~ 2023년 12월 10일 영구점용 : 2023년 12월 11일 ~ 2028년 12월 10일		

군산시 고시 제2021-130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 하였기에 같은 법 제8조 제6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08. 30.

군 산 시 장



■ 고시사항

- ① 허가연월일 : 군산시 협의 2021-00005호 (2021. 08. 30.)
- ② 허가를 받은자
 -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성명 : 전라북도청(수산정책과)
- ③ 허가목적 : 수산자원증강 목적 인공어초 설치
- ④ 허가장소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산66번지 인근 공유수면
- ⑤ 면 적 : 2,800㎡
- ⑥ 허가기간 : 2021. 08. 30. ~ 2036. 07. 31.까지

군산시 고시 제2021-131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 하였기에 같은 법 제8조 제6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08. 30.

군 산 시 장



■ 고시사항

- ① 허가연월일 : 군산시 협의 2021-00006호 (2021. 08. 30.)
- ② 허가를 받은자
 -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성명 : 전라북도청(수산정책과)
- ③ 허가목적 : 수산자원증강 목적 인공어초 설치
- ④ 허가장소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산142-1번지 인근 공유수면
- ⑤ 면 적 : 1,146.8m²
- ⑥ 허가기간 : 2021. 08. 30. ~ 2036. 07. 31.까지

군산시 공고 제2021-1707호

도로의 노선지정에 관한 공고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의 노선 지정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9. 1.

군 산 시 장



1. 도로의 노선지정 내용

읍면	도로의 종류	노선명	노선 번호	도로구간		총연장 (km)	주요 경과지	개발계획		지정사유
				기점	종점			도로너비 (m)	포장너비 (m)	
대야면	농도	접산선	대야 314호	대야면 접산리 1110	대야면 접산리 1023-1	678	접산리	8.0	8.0	농어촌도로 확·포장

2. 사업명 : 대야면 삼라교 재가설공사

3. 사업기간 : 2019. 12. 01. ~ 2022. 12. 31.

4. 도서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2021. 9. 1. ~ 2021. 9. 16.(15일간)

- 열람장소 : 군산시청 건설과 사무실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건설과(063-454-35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대야면 삼라교 재가설공사 -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m ²)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	면	리	분할전	분할후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또는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관리 내용	
1	군산	대야	접산	970		도	64.0	64.0	국(건설교통부)					
2				964		구	106.0	106.0	국(농수산부)					
3				1111		구	36.0	36.0	국(농림부)					
4				1012-1		답	549.4	549.4	군산시					
5				508-27		답	88.0	88.0	군산시					
6				508-33		답	238.0	238.0	군산시					
7				803-6		전	224.0	224.0	군산시					
8				803-5		도	89.0	89.0	군산시					
9				802-1		전	83.0	83.0	군산시					
10				508-28		답	752.0	752.0	군산시					
11				508-29		답	114.0	114.0	군산시					
12				508-34		답	224.0	224.0	군산시					
13				508-24		답	186.0	186.0	군산시					
14				988		도	30.0	30.0	국(농수산부)					
15				508-30		답	857.0	857.0	군산시					
16				518-27		도	10.0	10.0	군산시					
17				989		도	13.0	13.0	국(농수산부)					
18				508-32		답	500.0	500.0	군산시					
19				508-35		답	548.0	548.0	군산시					
20				1134		도	885.0	885.0	국(농림부)					
21				511-27		답	48.0	48.0	군산시					
22				1021-7		답	545.0	545.0	군산시					
23				1135		구	18.0	18.0	국(농림부)					
24				1136		도	34.0	34.0	국(농림부)					
25				1023-10		답	62.0	62.0	군산시					
26				1109		구	204.0	204.0	국(농림부)					
27				1011-5		답	1,479.6	1,479.6	조*빈	군산시 하신3길 7, 106동 904호				
28				1107		구	43.0	43.0	국(농림부)					
29				1132		도	319.0	319.0	국(농림부)					
30				1009-15		답	1,777.8	1,777.8	조*빈	군산시 하신3길 7, 106동 904호				
31				1009-14		답	1,471.5	1,471.5	조*빈	군산시 하신3길 7, 106동 904호				
32				1106		도	106.0	106.0	국(농림부)					
33				1011-4		답	636.0	636.0	군산시					
34				803-2		전	188.0	188.0	군산시					
35				803-3		도	136.0	136.0	군산시					
36				1110		도	457.0	457.0	국(농림부)					

군산시 공고 제2021-1713호

제24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4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부 의 안 건 -

연 번	안 건 명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4	군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군산시 건설기계 성능시험장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동의안
6	군산시 중장년 기술창업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7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군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 8월 2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공고 제2021-172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송창동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상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송달대상자의 수취인 주소·거소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8. 27.

군 산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송창동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나. 위치 : 군산시 송창동 2-1번지 일원

다. 사업내용 : 지장가옥 철거 19동, 콘크리트 포장 60㎡, U형개거 L=299m, 배수관(D400~D600) L=208m, 마운딩 95m 및 조경식재 1식

라. 시행자 : 군산시장(안전총괄과장)

마. 사업기간 : 2019. 1. ~ 2021. 12.

2. 공고기간 : 2021. 8. 27. ~ 9. 10.(14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시보, 홈페이지 게시

4. 보상계획

가. 장 소 : 군산시청 안전총괄과(5층) 자연재난계(☎063-454-3864)

나. 시 기 : 2021.8.27.(금) ~ 2021.9.10.(금)

다. 방 법 : 보상협의(소유권 등기이전) 후 신청 은행계좌로 입금

라. 대 상 : 송창동 급경사지 정비사업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마.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1) 공통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기재),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 그 외 :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축물등기부등본

※ 소유권 이외의 권리(근저당권 설정, 압류 등)에 과한 사항은 해지 후 협의

※ 상속대상자는 상속관련 절차 완료 후 협의

5. 공시송달 대상

1) 편입 토지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1	송창동	2-1	대	34㎡중 1/12	34㎡중 1/12	고선아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1길 50-3, 201호(신당동)	
2	송창동	2-1	대	34㎡중 1/12	34㎡중 1/12	고호림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33번길 35-3, 302호	
3	송창동	2-3	대	26㎡중 1/12	26㎡중 1/12	고선아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1길 50-3, 201호(신당동)	
4	송창동	2-3	대	26㎡중 1/12	26㎡중 1/12	고호림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33번길 35-3, 302호	
5	송창동	3-45	대	33㎡중 24/64	33㎡중 24/64	김영돈	군산시 송창동 3	
6	송창동	3-45	대	33㎡중 16/64	33㎡중 16/64	김정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목동 164-2	
7	송창동	3-45	대	33㎡중 4/64	33㎡중 4/64	김부주	익산시 주현동 212	
8	송창동	3-45	대	33㎡중 16/64	33㎡중 16/64	김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목동 164-2	
9	송창동	3-45	대	33㎡중 1/64	33㎡중 1/64	유성수	군산시 경암동 572	
10	송창동	3-45	대	33㎡중 1/64	33㎡중 1/64	유길봉	군산시 오룡동 935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1	송창동	3-45	대	33㎡중 1/64	33㎡중 1/64	유길성	군산시 오룡동 935	
12	송창동	3-45	대	33㎡중 1/64	33㎡중 1/64	유정식	군산시 오룡동 935	
13	송창동	3-56	대	50㎡중 28938/787500	50㎡중 19292/787500	이문심	군산시 구영6길 51(월명동)	
14	송창동	3-56	대	50㎡중 28938/787500	50㎡중 28938/787500	김삼순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 34다길 53(한남동)	
15	송창동	3-57	대	139㎡중 1/64	139㎡중 1/64	김영돈	군산시 송창동 3	
16	송창동	3-57	대	139㎡중 1/64	139㎡중 1/64	유성수	군산시 경암동 572	
17	송창동	3-58	대	53㎡중 1/64	53㎡중 1/64	김영돈	군산시 송창동 3	
18	송창동	3-58	대	53㎡중 16/64	53㎡중 16/64	김정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목동 164-2	
19	송창동	3-58	대	53㎡중 4/64	53㎡중 4/64	김부임	익산시 주현동 212	
20	송창동	3-58	대	53㎡중 16/64	53㎡중 16/64	김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목동 164-2	
21	송창동	3-58	대	53㎡중 1/64	53㎡중 1/64	유성수	군산시 오룡동 935	
22	송창동	3-58	대	53㎡중 1/64	53㎡중 1/64	유길봉	군산시 오룡동 935	
23	송창동	3-58	대	53㎡중 1/64	53㎡중 1/64	유길성	군산시 오룡동 935	
24	송창동	3-58	대	53㎡중 1/64	53㎡중 1/64	유정식	군산시 오룡동 935	
25	송창동	3-59	전	10㎡중 24/64	10㎡중 24/64	김영돈	군산시 송창동 3	
26	송창동	3-59	대	10㎡중 16/64	10㎡중 16/64	김정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목동 164-2	
27	송창동	3-59	대	10㎡중 4/64	10㎡중 4/64	김부임	익산시 주현동 212	
28	송창동	3-59	대	10㎡중 16/64	10㎡중 16/64	김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목동 164-2	
29	송창동	3-59	대	10㎡중 1/64	10㎡중 1/64	유성수	군산시 오룡동 935	
30	송창동	3-59	대	10㎡중 1/64	10㎡중 1/64	유길봉	군산시 오룡동 935	
31	송창동	3-59	전	10㎡중 1/64	10㎡중 1/64	유길성	군산시 오룡동 935	
32	송창동	3-59	대	10㎡중 1/64	10㎡중 1/64	유정식	군산시 오룡동 935	

2) 편입 지장물

순번	위치	지번	편입물건	구 조	수량 및 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 소	
1	송창동	2-1	가옥	블록, 스투트	89㎡	고선아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31길 50-3, 201호(신당동)	
			개장	목재, 함석	6㎡			
			담장	블록(H=1.5m)	3m	고호림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33번길 35-3, 302호	
			대문	함석	1식			
2	송창동	3-57	가옥	블록, 스투트	72㎡	김영돈	군산시 송창동 3	
			창고	블록, 스투트	13㎡			
			가추	스레트	15㎡			
			담장	블록(H=2.0m)	15m			
			대문	철재	1식			
			벗나무		1주			

6. 기타사항

- 가. 보상협의 요청서는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기간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 나. 기간 내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수용재결을 진행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안전총괄과 자연재난계(☎063-454-38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공고 제2021-1728호

2040년 군산 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공고

2040년 군산 도시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일
군 산 시 장



1. 개최목적

가. 「2040년 군산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2. 개최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1. 9. 15(수) 14:00 ~ 15:30

나. 장 소 : 군산시 예술의전당(소공연장)

3. 2040년 도시기본계획(안) 개요

가. 목표 년 도 : 2040년

나. 계 획 인 구 : 290,000명

다. 공간적범위 : 군산시 행정구역 전역(A=952km², 새만금사업지역 285km² 포함)

라. 내용적범위 : 도시미래상, 계획목표 및 추진전략, 인구 및 주요지표, 부문별 계획 등

4. 공청회 참여 방법

가. 시설·단계별 방역조치에 따라 참여인원이 우선 49명으로 제한됨으로 혼잡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청회 참여신청서를 아래의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단계별 방역조치에 따라 참여인원이 변동될 수 있음

- 1) 제출기한 : 2021. 9. 1.(수) ~ 2021. 9. 10.(금) 18:00 까지
 - 2) 제출방법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군산시 시청로 17) 방문 및 우편 제출
Fax(063-452-8171) 및 E-mail(kimskking@korea.kr)
 - 3) 서 식 : 군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붙임 서식 참조
 - 4) 접수결과 : 2021. 9. 13(월) 13:00이후 개별통보(문자메시지)
- ※ 접수순으로 선착순 기회 부여(개인사정으로 불참 연락시 차순위)

나. 비대면 참여 :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 검색창에 “군산시” 검색

5. 의견제출

가. 「2040년 군산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청회 당일 입구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폐회 후 제출하여 주시거나, 아래의 방법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제출기한 : 2021. 9. 15. ~ 2021. 9. 30.(공청회 개최후 14일간)
- 2) 제출방법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군산시 시청로 17)) 방문 및 우편 제출
또는 Fax(063-452-8171), E-mail(kimskking@korea.kr) 전송
- 3) 의견서식 : 군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붙임 서식 참조
- 4) 미참석자를 위한 군산시 홈페이지에 공청회 자료 게재

6. 기 타

가. 코로나19 관련 참석자 준수사항

- 1) 발열, 호흡기 증상(인후통, 기침, 호흡곤란, 권태감, 두통, 근육통 등) 등이 있거나 14일 이내 해외여행 이력이 있을 경우 참석 불가
- 2) 참석 시 마스크 착용 필수(미착용시 참석 불가)
- 3) 시설·단계별 방역조치에 따른 좌석배치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음

나. 「2040년 군산 도시기본계획(안)」은 행정절차 이행과정(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공청회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군산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계 (☎063-454-350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40년 군산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 참여신청서

성 명		연 락 처	
주 소			
※ 백신접종 여·부 : (1차, 2차 백신접종 완료시 표기)			

※ 참여 여·부를 기재한 연락처로 문자메시지 통보할 계획이니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